#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75 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 김기현 · 서천호 · 서일준

박성훈 • 이헌승 • 안철수

강승규 • 우재준 • 박충권

백종헌 • 이성권 • 박성민

정연욱 · 김 건 · 인요한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지구촌 한민족 공동체'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,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.

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 포청이 출범하였지만, 여전히 법적·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 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(危難)에 처한 재외동 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재외동포 관련 단 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 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법률 제 호

#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 중 "거주국"을 "거주국 및 대한민국"으로 하고,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차. 「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정책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②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,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,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"를 "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을"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)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

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"재외동포정책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. 가. (생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거주국 및 대한 나.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. ~ 자. (생 략) 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 차. 「해외긴급구호에 관한 <신 설>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재난에 처한 재외동포 에 대한 긴급구호에 관한 정책 차. (생략) 카. (현행 차목과 같음) 제8조(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 |제8조(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 가) ① (생략) 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②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 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 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니 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 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 📗

출하여야 하며,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 여야 한다.

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 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 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 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.

④ (생 략)

제11조(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등)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<u>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</u>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립하다.

② ~ ⑦ (생 략) <신 설> 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,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 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재외 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 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)
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

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